

작성 방법

1. ①부터 ③까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.
2. ④부터 ⑧까지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.
3. ⑨부터 ⑫까지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.
4. ⑬ 종목명란에는 주식등을 종목별 종류별(주식의 경우에는 구주·신주·우선주 등)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 다만, 당해 주식등이 증권시장,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.
5. ⑭부터 ⑳까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, ㉑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.
6. ㉒부터 ㉕까지에는 양도한 주식등의 수 ㉖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, ㉗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.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6조의2제3항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액을 기재합니다.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.